

화재보험 요율의 적용 방법

— 보험계약자 이해를 중심으로 —

윤 동 혁
〈본 협회 업무부 차장〉

*전호에 이어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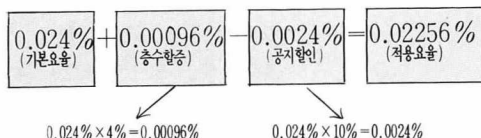
예4) 기본요율에 할증률과 할인율이 있는 경우

〈보기〉
소재지 : 대구시 동구 방촌동 17번지
소유자 : 홍 길동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17층 아파트
(건물 주위의 공지거리가 6m일때)
보험가입금액 : ₩70,000,000

적용요건 { 물건 : 주택물건
등지 : 3등지
건물급수 : 1급
기본요율 : 0.024%
할증률 (층수할증) : 기본요율의 4%
할인율 (공지할인) : 기본요율의 10%

〈계산방법〉

● 적용요율 산출



● 화재보험료

₩70,000,000 × 0.02256% = ₩15,792.....①

★ 특수건물할인 : 30%

₩15,792 × 30% = ₩4,737.....②

① - ② = ₩11,055.....③

● 신채보험료 : 화재보험료의 10%

₩11,055 × 10% = ₩1,105.....④

● 총보험료

③ + ④

₩11,055 + ₩1,105 = ₩12,160
(화재보험료) (신채보험료) (총납입보험료)

주1) 공지할인율표는 다음과 같다.

건물의 주위에 다음의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 및 그 수용동산에 대하여 공지할인을 한다.

〈표 1〉 공지할인율표

대면건물의 구조	1급, 2급	3급, 4급	1급, 2급	3급, 4급
공 지 거 리	5m-7m미만	10m-13m미만	7m이상	13m이상
할 인 율	기본요율의 10%		기본요율의 20%	

- ★ 대면건물 : 당해 건물의 벽면으로부터 각각 최단거리 내에 있는 건물을 말한다.
- ★ 공지거리 : 두 건물의 가장 가까운 벽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다만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기둥과 기둥사이를 연결한 선을 외벽면으로 본다.

예5) 기본요율에 할증률과 할인율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보기〉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0번지
소유자 : 홍 길동
건물구조 : 세멘트 벽돌조 와즙 1층건 주택1동
보험가입금액 : ₩50,000,000
기타 : (가) 건물주위의 공지거리 : 15m
(나) 자동화재경보설비(한국화재보험협회의 검사에 합격)
(다) 풍수해 위험 담보

적용요건 { 물건 : 주택물건
등지 : 2등지
건물급수 : 3급
기본요율 : 0.053%

할증률 (풍수재 위험부담 특약요율) :

0.04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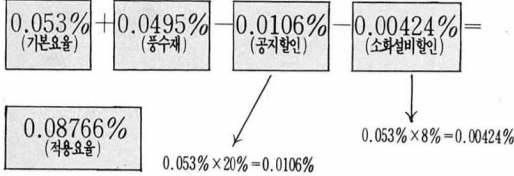
할인율

- 공지할인 : 기본요율의 20%
- 소화설비할인

자동화재경보설비 : 기본요율의 8%

〈계산방법〉

● 적용요율 산출



● 화재보험료

₩ 50,000,000 × 0.08766% = ₩ 43,830

주2) 소화설비할인은 소화설비규정에 따라 한국 화재보험협회의 검사에 합격한 소화설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화설비할인을 한다.

나. 일반물건 (물건별 구분은 화재보험요율서 참조)

일반물건은 업종이 다양하므로 요율 적용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므로 요율서의 제반 내용을 우선 숙지하여야 하며 특히 요율서에 명시되어 있는 적용상의 유의사항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란다.

일반물건에서 요율의 종류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요율의 종류

가) 기본요율

일반물건의 기본요율은 등지별·급별에 따라 적용한다.

표 2 기본요율표

등지별	급별	1급	2급	3급	4급
1등지		0.105	0.168	0.273	0.420
2등지		0.135	0.216	0.351	0.540
3등지		0.165	0.264	0.429	0.660
4등지		0.195	0.312	0.507	0.780

(나) 할증요율

- ① 건축할증
- ② 동산할증
- ③ 작업할증
- ④ 위험품할증
- ⑤ 직업할증
- ⑥ 고층건물할증

주3) 위험품할증과 작업할증·직업할증이 겹쳐질

경우에는 세 할증 중 높은 것을 부가한다.

주4) 동산할증은 위험품할증을 부가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 할인요율

- ① 공지할인
- ② 소화설비할인
- ③ 방화문할인
- ④ 주방및 화상, 방화구획, 피난설비할인
- ⑤ 고액보험계약할인

(라) 특장물건요율

- ① 야적의 동산
- ② 석탄
- ③ 피상의 금속물 및 선철류
- ④ 옥외설비 및 장치
- ⑤ 전기 및 가스공급업자의 배전 및 배급설비
- ⑥ 기차·동차·전차
- ⑦ 지하도 소재 물건
- ⑧ 지하저유탱크 및 저장유
- ⑨ 수송도중화물
- ⑩ 내온사인장치 (전광뉴스 및 그밖의 전식장치를 포함한다.)
- ⑪ 무벽건물
- ⑫ 컨테이너

(마) 특별요율

- ① 관공서 및 학교건물
- ② 방위산업체
- ③ 특수건물
- ④ 올림픽공원 소재물건

(바) 특약요율

- ① 케도차량확장위험부담 특약요율
- ② 도난위험부담 특약요율
- ③ 구내폭발위험부담 특약요율
- ④ 산림화재위험부담 특약요율
- ⑤ 산림풍수재부담 특약요율
- ⑥ 신체손해배상책임부담 특약요율
- ⑦ 소요·노동쟁의·항공기 및 차량위험부담 특약요율
- ⑧ 유리손해부담 특약요율
- ⑨ 냉동(냉장) 위험부담 특약요율
- ⑩ 유가증권 재발행비용부담 특약요율
- ⑪ 야외간판 풍수재위험부담 특약요율

주5) 이상 열거한 특약요율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선택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소정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각 업종별로 적용 실례를 들기로 한다. (㉞)